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2021년 6월 15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6.15.(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1. 6. 14.(월)	담당부서	석유산업과
담당과장	박덕열 과장(044-203-5220)	담 당 자	정다연 사무관(044-203-5225)

석유수입 · 판매부과금 환급기관을 석유관리원으로 일원화

–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 6.15(화) 국무회의 통과 (7.1일 시행)

□ 석유수입·판매부과금의 환급기관을 일원화하는 「**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**」(이하 '시행령') **일부개정령안**이 6.15(화)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.1(목)부터 시행한다.

○ 석유수입·판매 부과금은 1·2차 석유파동 이후 국내 석유수급 및 석유가격안정을 위해 도입되었으며, 수입한 원유로 생산된 석유제품을 수출하거나 공업원료 등으로 사용할 경우 환급을 받고 있다.

□ 기존에는 환급사유별로 환급물량 확인기관이 상이하고, 물량확인 후 별도로 환급신청을 해야 되어 **환급처리기간 과다**(물량확인 5일 + 지급 7일), **동일서류 중복제출 등 신청업체의 불편함**이 있었다.

□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금번 개정을 통해 **업무처리기간을 단축**(12→7근무일)하고, **제출 서류를 간소화**함으로써 **행정 효율성을 제고**하고,

○ 석유관리원에서 관리하던 기존 환급대상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선(先) **서류확인 → 후(後) 현장실사 병행방법**을 전체 환급용도로 확대함으로써 **검증·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**한다고 언급하였다.

< 현행 >

징수	환급	
	환급 물량확인	지급
석유공사	석유공사	석유공사
	석유관리원	
	가스공사	

→

< 개편(안) >

징수	환급 (물량확인+지급)
석유공사	석유관리원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정다연 사무관(☎ 044-203-522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